

습니다.

沈玩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專門委員 沈玩澤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
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檢討報
告를 드리겠습니다.

(參 照)

1. 제안이유

'94. 3. 16 지방자치법 개정과 '94. 7. 6 동법
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
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애, 상해를 입은
경우 그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
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제3조 의원의 직무상 사망, 장애, 상해를
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
- 제4조 의원의 직무상 사망, 장애, 상해를
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기준 마련
- 제7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결과
구청장이 보상금 지급 결정하여 지급
- 제9조 직무로 인한 사망, 상해 등의 해당
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
“부산직할시 사하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
상심의회” 구성

3. 검토의견

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
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
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
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
공무여행 중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
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
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
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
의원이 직무상 사망, 장애, 상해를 입었을
경우 금전적으로 손해를 전보(填補)하여 줌

으로써 사회 배분적 정의 차원에서 타당한
것으로 생각됨.

○專門委員 沈玩澤 이상 檢討報告를 마치겠습
니다.

○委員長 金信祐 沈玩澤 專門委員 수고했습니
다.

다음은 質疑順序입니다.

質疑는 1問1答式으로 進行하고 質疑하실 때는
반드시 發言權을 얻어서 質疑해 주시고 條例案과
직접 관련없는 事項은 質疑를 삼가해 주시기
바랍니다.

沙下區議會議員傷害等補償金支給에관한條例案
에 대하여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
주시기 바랍니다.

(「없습니다」 하는 이 있음)

具本春 委員

○具本春委員 具本春 委員입니다.

條例案 9條2項에 보시면 審議會는 委員長 한
명과 委員 4명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

이 또한 內容을 보시면 區議會議員 中 한 名,
구 본청 관련 실·과장 한 名, 醫務職 公務員
한 名,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
한 名 이렇게 4명으로 당연직에 들어가는데 첫째
議會議員 中에서 한 名을 區廳長이 임명 또는
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
委員이 특히 또 任期가 2年으로 되어 있습니다.

議會議員이 계속 연임을 하고 계속 한다는
法이 없기 때문에 議會議長의 추천을 받아서 한
명이 된다는지 이런 條項이 삽입돼야 될 것 같고
그 다음 뒤에 14條에 보시면 審議會에 幹事를
두게끔 되어 있는데 幹事도 審議委員 中에서
나옵니까? 아니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?

○企劃監査室長 成鍾玟 幹事は 規則으로 정해
가지고 별도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.